안산대학교	CCTV설치및운영규정	규정번호	3-1-27
		제정일자	2008.12.30
		개정일자	2024.09.01
		개정차수	1차
		소관부서	행정지원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의거 안산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내 CCTV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모니터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09.01.]

제3조(CCTV설치) 대학내 모든 CCTV의 설치는 중요기자재, 비품의 도난방지 및 경비와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며, 그 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4조(CCTV설치절차 및 운영) CCTV를 설치 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운영방법을 준수한다.

1. 설치요청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설치목적, 설치위치, 기기의 종류, 수량, 촬영시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절차, 저장범위 및 기간, 처리방법, 정보활용방법, 정보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지정한 설치요청서를 작성한 후 행정지원처를 경유하여 교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무위원회는 설치요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검토하고 CCTV설치 필요성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 법규에 위반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한다.
3. 설치요청자가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에 설치용도 등을 안내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정보책임자가 저장된 자료를 설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 저장된 자료는 관계법규와 총장이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관리) 정보취급자는 저장된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제6조(교육) 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7조(책임자의 지정) ① 대학 내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설치·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대학 내 CCTV설치·운영,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영상정보의 보호·열람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4.09.01.]

제8조(감시지역) ① 설치된 CCTV는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2. 사각지역으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 하는 구역

3. 중요지역 및 중요실

②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는 CCTV를 설치·운영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09.01.]

제9조(설치·운영 점검) ① 대학 내 CCTV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월 1회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별지서식 1호]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01.]

제10조(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책임자·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설치된 각 실 또는 건물 입구)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01.]

제11조(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09.01.]

제12조(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4.09.01.]

제13조(열람 등의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CCTV 설치·운영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09.01.]

제14조(영상정보의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4.09.01.]

제15조(정보의 관리) 정보취급자는 저장된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본조신설 2024.09.01.]

제16조(사무의 위탁) ① 총장은 CCTV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전문기관에 CCTV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CCTV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CCTV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자는 제9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9.01.]

제17조(비밀유지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09.01.]

제1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 년 12 월 30 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정 제정 전에 설치된 CCTV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